



법령과 고시

Liquefied Petroleum Gas

# LPG 특정사용시설 검사업무 처리 지침

이용권 /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부장

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부실시공의 근원적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PG충전시설, LPG저장시설, LPG판매시설, LPG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규정과 LPG기술검토처리지침 등 시공과 관련된 표준이 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가스시공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.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제반 지침들을 올해의 시공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. 이에 따라 본지는 가스시공업계가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재할 계획이다.





【별표1】

## 변경공사시의 완성검사 수수료

### 1. 수수료

변경공사 내용	시설구분	수수료
저장설비의 위치변경 · 능력증가 · 교체설치 및 형태변경공사	공통	• 위치변경 · 능력증가 · 교체설치 또는 형태변경 되는 설비의 저장능력에 해당되는 수수료
가스설비의 신규설치 또는 증설 공사	저장소 부속 특정사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시설의 최저수수료(56,000원)
	그 밖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시설의 최저수수료(10,500원)
배관을 20m 이상 증설 · 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	저장소 부속 특정사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시설의 최저수수료(56,000원)
	그 밖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시설의 최저수수료(10,500원)
배관의 지하매설 또는 건축물 내 매몰설치 공사	저장소 부속 특정사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시설의 최저수수료(56,000원)
	그 밖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시설의 최저수수료(10,500원)
소형저장탱크의 충전구 연장공사	저장소 부속 특정사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시설의 최저수수료(56,000원)
	그 밖의 특정사용시설	• 당해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

### 2. 수수료 산정기준

#### 가.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· 능력증가 · 교체설치 및 형태변경 공사

- (1) 위치변경 : 위치변경된 저장능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
- (2) 능력증가 : 증가된 저장능력만을 기준으로 산정
- (3) 교체설치 : 교체설치된 저장능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
- (4) 형태변경 : 형태변경된 저장능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

나.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저장설비를 이용하는 업무용 시설에서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· 능력증가 · 교체설치 및 형태변경공사만을 할 경우에는 다수의 사용자 중 1인의 사용자가 1건으로 완성(변경)검사를 신청토록 한다.

다. 공동주택에서 공동저장설비를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경우의 수수료는 모든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 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
- 라. 동시에 1인의 사용자가 2가지 이상의 변경공사시에는 수수료 금액이 큰 1가지 것만을 징수한다.
- 마. 다방의 경우에는 위 표에 관계없이 10,500원(부가세 별도)을 징수한다.
- 바. 집단공급시설 및 공동저장설비에 의하여 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개인세대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(어린이 놀이방 등)은 LPG특정사용시설의 최저수수료(W10,500 : 부가세 별도)를 적용한다.
- 사. 공동저장설비의 사용자가 단계적으로 입주(완성검사 신청)시에는 “공동저장설비의 저장능력 ÷ 수검업소수”에 의한 저장능력에 해당되는 완성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, 이미 검사완료된 기존 사용시설은 동 계산식에 의한 저장능력으로 전산에 수정입력시켜야 한다.

[별표2]

## 용기의 가스발생능력

### 1. 용기 1개당 가스발생능력 [kg/h]

외기온도 (°C)	가스조성 (프로판%)	자동질체기 사용			자동질체기 미사용		
		50kg용기	20kg용기	10kg용기	50kg용기	20kg용기	10kg용기
5	95	7.4	3.0	1.6	4.8	2.0	1.1
	90	6.2	2.9	1.5	4.3	1.7	1.0
	80	4.9	2.3	1.2	3.1	1.3	0.7
0	95	5.7	2.3	1.2	3.8	1.7	0.9
	90	4.9	2.0	1.1	3.4	1.4	0.8
	80	3.9	1.6	0.8	2.3	1.0	0.5
-5	95	4.1	1.8	0.9	3.1	1.3	0.7
	90	3.5	1.6	0.8	2.6	1.1	0.6
	80	2.5	1.1	0.5	1.5	0.7	0.4
-10	95	3.0	1.2	0.7	2.3	1.0	0.5
	90	2.5	1.0	0.5	1.9	0.8	0.4
	80	1.4	0.6	0.3	0.8	0.3	0.2
-15	95	1.8	0.8	0.4	1.6	0.7	0.3
	90	1.3	0.6	0.3	1.1	0.5	0.3
	80	0.4	0.2	-	0.1	-	-
-20	95	0.9	0.4	0.2	0.9	0.4	0.2
	90	0.5	0.2	-	0.4	0.2	-
	80	-	-	-	-	-	-

(주) 1) “-”는 가스발생능력이 0.1kg/h 이하인 경우임



- 2) 용기 표면의 수증기 응축 및 얼음 형성은 고려하지 않음.
- 3) 자동절체기 사용시, 사용측 용기의 잔가스를 0으로 가정하고, 예비측의 잔가스 50%일 때와 용기 내부 증기압  $1\text{kg}/\text{cm}^2$ 일 때를 기준으로 함.
- 4) 가스조성비는 95%로 한다.

## 2. 지역별 용기 설치수량 결정시의 기준온도

[단위 : °C]

지역	기준온도	지역	기준온도	지역	기준온도
속초	0	부산	0	부여	0
대관령	-5	충무	0	금산	-5
춘천	-5	목포	0	이리	0
강릉	0	여수	0	부안	0
서울	-5	완도	0	임실	-5
인천	-5	제주	5	정주	0
원주	-5	서귀포	5	남원	0
울릉도	0	진주	0	함평	0
수원	-5	강화	-5	승주	0
서산	0	양평	-5	장흥	0
울진	0	이천	-5	해남	0
청주	-5	인제	-5	고흥	0
대전	-5	홍천	-5	성산포	5
추풍령	-5	삼척	0	대정	5
포항	0	제천	-5	칠곡	0
군산	0	충주	-5	영주	-5
대구	0	보은	-5	점촌	-5
전주	0	온양	-5	영덕	0
울산	0	유성	-5	의성	-5
광주	0	대천	0	선산	0
영천	0	밀양	0	거제	0
거창	0	산청	0	남해	0
합천	0	함안	0	-	-

- (주) 1)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위의 표의 지역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의 온도를 따른다.
- 2) 기준온도는 최근 30년(1971~2000년)간의 1월 평균온도임
- 3) 학교 등 동절기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후 최초로 가스를 사용하는 달(2월)의 평년값 (위 표보다  $-5^{\circ}\text{C}$ 가 상향된 온도)을 적용할 수 있다.

[별표3]

### 공동주택의 동시사용률

1. 취사 및 난방용으로 가스를 공동저장하여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에 있어 수요자간에 연소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비율(%) (이하 "동시사용률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

[사용가구수별 동시사용률]

호(업소)수	동시사용률(%)	호(업소)수	동시사용률(%)
1	100	20	42
2	78	21	42
3	69	22	42
4	63	23	41
5	59	24	41
6	56	25	41
7	54	26	40
8	52	27	40
9	50	28	40
10	49	29	39
11	48	30~33	39
12	47	34~39	38
13	46	40~46	37
14	46	47~56	36
15	45	57~70	35
16	44	71~89	34
17	44	90~117	33
18	43	118~160	32
19	43	161~200	31

2. 200가구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.

$$\bullet \text{동시사용율(%)} = 25.6 + \frac{74.4}{\sqrt{\text{가구수}}}$$



[별표4]

### 1. 충전량에 대한 상수(K)

남아 있는 액화가스의 양 (%)	상수(K)
60%	0.03906
50%	0.03515
40%	0.03125
30%	0.02734
20%	0.02344
10%	0.01758

### 2. 외부온도에 대한 보정계수

외부온도	보정계수(C)
-25°C	0.35
-20°C	0.80
-15°C	1.25
-10°C	1.70
-5°C	2.15
0°C	2.60
5°C	3.05
10°C	3.50
15°C	3.95
20°C	4.40

(주) 외부온도는 지상저장탱크인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음 표를 따르도록 하고, 지하저장탱크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°C를 적용할 것.

### 3. 지역별 외부기준온도

“별표2 제2호의 기준에 의함”

[별표5]

## LPG특정사용시설 검사서식(OMR) 작성방법

### 1. 작성방법

#### 가. 일반현황

##### (1) 보호시설

보호시설, 지하실 및 집단급식이 중복될 경우 해당 항목마다 표기

##### (2) 다중이용시설

(가) 노인복지(경로당) :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

(나) 노인복지(기타) :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

(다) 기타 : 액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(종합병원은 기타로 마킹)

##### (3) 저장능력 산정근거

지침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능력 200kg 이하인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(연소기 증설 또는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변경완성검사 포함)시에만 기재

##### (4) 압력조정기

사용하는 압력조정기가 2개 이상일 경우, 전산에서 1개밖에 인식하지 못하므로 압력조정기가 2개 이상 설치된 시설은 사용압력이 가장 높은 압력조정기 1개만 마킹

##### (5) 보험가입의 확인불가

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표기

※ 일반현황 관리 : OMR리더기 프로그램은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기존데이터에 상관없이 항상 업데이트되어 OMR 작성시 마킹이 누락된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므로, 마킹여부와 관계없이 “일반현황”은 그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사시마다 모두 마킹하여야 함.

#### 나. 검사내역

##### (1)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

(가) 내압시험압력 : 지침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압력기록계로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기밀시험으로 내압시험을 갈음한 경우에는 기밀시험압력을 기재하고 내압시험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압시험압력을 기재

(나) 기밀시험 : 지침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밀시험 중 자기압력기록계 또는 누출검사로 실시한 경우 실시한 기밀시험 방법에 “○”로 표기

##### (2) 검사결과 표기방법



- (가) 적합 : 종합판정란에만 적합으로 마킹
- (나) 부적합 : 개별 부적합항목 및 종합판정란에 마킹
- (다) 경미지적 : 검사결과 경미지적사항만 있을 시 검사는 적합처리되며, 경미지적사항란에 마킹(비고란은 경미지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) 다만, 경미지적사항 외의 불합격사항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
- (라) 현장조치 : 현장에서 부적합사항을 조치함으로써 적합하게 되었을 경우에 표기(예 : 마감조치 현장처리, 누출부위 현장조치 등)

## 2. 중요 칙안사항

가. 제1호 나목의 검사결과 표기방법 중 “경미지적”과 “현장조치”에 대한 기재 철저

- (1) 경미지적사항을 차기 검사시까지 미시정시에는 지침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처리(차기 정기 검사시 사전에 경미지적사항 확인 후 검사 실시)
- (2) 현장조치 사항은 “가스누출 부위 현장조치” 또는 “마감조치 현장처리”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공사의 역할(공로)을 홍보함으로써, 추후 검사기관 복수경쟁체제 및 검사권 이양 요구 등 쟁점 발생시 우리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, 타 기관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중요자료가 되므로 철저히 작성 요망

나. 담당 부장은 본 검사표 작성에 대한 지도·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

- (1) 검사표 작성방법의 적정여부를 “엘피 620 - 10045호(2001. 3. 21, 위임전결규정·개정에 따른 처리방안 통보)”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담당자별 샘플링 체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.(담당자 교육 및 샘플링 체크 횟수 증가 등)
- (2) 경미지적사항만 있을 경우에는 마킹 후 적합처리하고, 차기 정기검사시 확인토록 하는 제도를 정착 시킬 것.



[별표6]

## 검사표 작성방법

### 1. 단순 검사항목은 전회 검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표기

2회 사용 정기검사표에서 다음 예시와 같은 단순검사 항목은 당해 검사표의 2회차 검사결과가 1회차 검사 결과와 동일할 경우에는 “전회 검사결과와 동일”로 표기

- 인화성 물질 방지여부, 온도계 설치여부, 흐름방향 표시 여부, 불연재료 사용여부, 안전유리 설치여부, 안전조치 여부 등 계측 정밀확인의 필요없이 외관상으로 유(有) 무(無) 또는 적 부만을 체크하는 단순 검사항목
  - 긴급차단장치의 작동상태, 통풍설비의 작동상태 등 양호 불량만을 체크하는 단순검사 항목
- 작성방법 : “전회검사결과와 동일”이라는 고무인을 이용하여 표기
- ※ 기존의 작성방법대로 검사결과를 기재하는 방법도 병행 가능

### 2. 전체 실측이 필요한 경우와 부분 실측만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

기준치의 2배 이상이 되는 검사항목 : 기준치의 2배까지만 실측 후 결과 기재

- 작성방법 “예” :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
- 기준 : 50m 이상
  - 검사결과 : “100m 이상”으로 표기

(기준치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표기)

※ 기준치의 2배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실측치를 기재

### 3. 검사결과 기재시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작성 가능

1회 사용 검사표 또는 2회 사용 검사표의 1회차 검사시에는 워드프로세서로 검사결과 작성 가능(수기 또는 워드프로세서 중 택일)

- 작성방법 : 워드프로세서의 글씨체 중 필기체로 작성

### 4. 검사표에 검사항목이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의 검사결과 작성

“특정설비의 재검사 미필” 등 검사표에 검사항목이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의 검사결과가 불합격시에는 검사표 여백 또는 비고란에 불합격 내용 기재 후 불합격 처리



[별표7]

## LPG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징구서류

### 1. 징구서류

- 시설위치도 및 시설 설치도면 2부 (별지 제4호 서식)
  - 저장능력 산정표(저장능력 200kg 초과시에 한함, 별지 제11호 서식)
  - 비파괴시험성적서 및 관계 도면
  - RT필름 보관증
  - PE배관 용착성적서 및 관계도면
  - 시공현황(별지 제3호 서식)
  - 소형저장탱크 설치 제외 행정관청 인정공문 사본 (500kg 이상 용기 저장시에 한함)
  -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 인정 행정관청 공문(해당시에 한함)
  -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증빙서류(해당시에 한함)
    - 수요자와 관리주체와의 공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
    - 관리주체와 가스공급자와의 공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
  - 내진설계서(개별 저장능력 3톤 이상의 지상저장탱크에 한함)
  -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계산서 (가스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)
  - 특정설비 검사합격 증명서
- ※ 명판 및 합격표시 탁본은 징구대상에서 제외

### 2.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(징구하지는 않고 현장 확인만 하는 서류)

- 방폭전기기기 검정합격증 (모든 시설에 한함)
- 배관재질 확인서(KS마크 등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, 재질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측정으로 확인)
-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정기교육 이수증(교육 미이수의 경우에는 이수 계도)

[별표8]

##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시설검사 착안사항

### 1. 용어정의

- 가스누출경보기 :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자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, 경보부와 검지부로 구성되어 있음(고시 제2-2-28조, 29조)
-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: 가스가 누출되었을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서, 가스누출자동차단기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말함.
- 가스누출자동차단기 : 규정된 유량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통과할 때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성능(파류차단성능)과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성능(누출점검 성능)을 가진 장치를 말함(시행규칙 별표6-2-나(1))
-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: 원격개폐가 가능하고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며, 점지부, 제어부 및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음(시행규칙 별표6-2-다(1), 고시 제9-1-19조, 20조)
- 단독형 경보기 : 탐지부(검지부)와 수신부(경보부)가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로서 가정용으로 사용됨[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(행정자치부 고시) 제2조 제10호 및 제3조]
- 분리형 경보기 : 탐지부(검지부)와 수신부(경보부)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로서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됨. 이 경우 영업용은 1회용으로 하며, 공업용은 1회용 이상의 용도로 함(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9호 및 제3조)
- 방수형 경보기 : 가스누출경보기(검지부)의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(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4호)

### 2. 검사업무 착안사항(적용방법)

구분	가스누출경보기	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
설치 대상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장탱크 설치 시설(시행규칙 별표18-1-마)</li> <li>-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(고시 제2-4-2조)</li> <li>-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시설 (고시 제3-3-7조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LPG 특정사용시설</li> </ul>



구분	가스누출경보기	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
경보기의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리형으로서 가스농도를 지시할 수 있는 것(고시 제2-2-28조)</li> </ul> <p>※ 경보부와 검지부를 분리 설치</p>	
정보부(제어부) 설치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제자(안전관리자 등)가 상주하거나, 경보를 식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(고시 제2-2-30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.(고시 제3-3-5조)</li> </ul>
공업용 경보기 설치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규정된 바 없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이면 가능(고시 제2-2-29조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규정된 바 없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제어부는 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면 가능(고시 제3-3-5조)</li> </ul> </li> </ul>
방폭구조 경보기 (검지부) 설치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LPG특정사용시설 중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저장탱크 설치 시설 : 방폭구조 이어야 함(시행 규칙 별표18-1-마)</li> <li>- 소형저저장탱크 설치 시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전용탱크실 내 설치 : 방폭구조이어야 함(LPG 특정사용시설 지침 제29조)</li> <li>▷ 옥외 노출 설치 : 규정된 바 없음. 다만, 공업용 일 경우에는 검지부가 방폭구조이어야 함.(공업용의 경우에는 “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음.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“방폭형” 문자 및 방폭등급이 표시되어 있음.</p> <p>-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 시설 : 규정된 바 없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규정된 바 없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전용탱크실 내에 소형저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전용탱크실 내의 전기설비(검지부, 조명등, 스위치 등)는 방폭구조이어야 함.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“방폭형” 문자 및 방폭등급이 표시되어 있음.</p>
방수형구조 경보기(검지부) 설치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규정된 바 없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방수형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“방수형”이라는 문자 표시가 있음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지부는 방수형이어야 함 (고시 제9-1-20조)</li> </ul> <p>※ 방수형의 경우에는 검지부에 “방수형”이라는 문자표시가 있음.</p>

#### <참고사항>

- LPG 특정사용시설 중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대상시설은 경보기 설치와는 별도로 연소기실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.
-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음.
-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전원 OFF시 발생현상
  - 기계식 : 전원 OFF 당시의 현상 유지(차단부가 ON상태이면 ON, OFF상태이면 OFF상태로 유지)
  - 솔밸브식 : 전원이 OFF되면 자동으로 차단부가 OFF됨.



[별표9]

## LPG특정사용시설 재 검사표

결 재	부 장	지역본부(지사)장

○ 재검사일자 : 년 월 일 [필증NO : ]

업 소 명		업소코드	
소 재 지		검사구분	완성, 정기
대 표 자		전화번호	

관련조항	부적합내용	재검사 결과	판정	
			적합	부적합
검사결과(종합)		합격, 불합격	검사원	
			(인)	

## (주) 검사표 작성요령

- 1) 검사결과는 실측결과를 기재
- 2) 판정란에 합격시에는(○), 불합격시에는(×)로 표기
- 3) 관련조항란에는 “액법 시행규칙 별표18-1-가(1)” 부적합 내용란에는 “호스길이 3m 초과” 등으로 표기

[별표10]

## 용기집합설비의 예비 기체라인 설치방법

